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엄셋별 의원 발의]

의안번호	2647
------	------

발의일자 : 2024. 11. 12.

발 의 자 : 엄셋별 의원

찬 성 자 : 고영찬 의원

1. 제안이유

이스포츠는 4차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이스포츠 관련 사업 및 시설 설치·운영(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위탁운영(안 제6조).

마. 표창(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및 제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 2024. 11. 15. ~ 2024. 11.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
4. 이스포츠 선수·동호인·동호회 육성 및 지원
5.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6. 국내외 이스포츠 교류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2.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이스포츠법)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78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